

*표시부분은 필수 기재사항

■ 신청정보 [“필수”]

고객 정보	*성명 Name		*생년월일(성별) Date of birth	남 ☐ 여 ☐ 내국인 ☐ 외국인 ☐ Male Femal Local Foriegner			
	*상호(법인명) 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License No.		*핸드폰번호 Mobile No.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요금청구방법 Billing method	☐ LMS(문자서비스) ☐ 이메일 ☐ 지로청구서 ☐ 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이메일 E-mail	@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실 경우 사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발송 후 정상접수 여부를 콜센터(1577-6580)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페이를 통하여 요금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카카오페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페이를 통하여 요금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네이버㈜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도시가스 사용/ 공급(계약체결, 사용자등록, 변경, 해지)관리 · 요금청구(모바일/App/LMS/이메일), LMS(안전점검, 점검)안내 · 세금계산서 발행, 수납관리(자동이체사용) · 추심관리, 체납세대 채무불이행 등록, 채권회수 · 안전점검/ 계량기 교체관리, 민원처리 및 결과확인, 부가서비스 제공 · 본인확인, 고객불만처리, 서비스 품질개선 ·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경감 혜택 제공	(필수) · 고객정보: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체기록, 결제기록, 보증금 관련 정보, 도시가스 사용량, 사용요금 (선택) ·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네이버톡톡	사용계약 만료 후 5년

(필수)

☐ 동의안함

※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서비스가 불가능 합니다.

☐ 동의함

(선택)

☐ 동의안함

※ 서비스이벤트 정보 제공을 위한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 동의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이용약관은 (주)미래엔서해에너지 홈페이지(<http://www.miraense.com>)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동의 사항은 계약 당시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정보 수정 변경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ex. 전화번호 변경, 개명, 자동이체 변경, 공급권역 내 사용, 해지 등)

※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계약해지 시 소멸되나 연체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결제원,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NET, (주)인피니소프트, (주)카카오페이, 네이버(주), 네이버파이낸셜(주), NICE평가정보, 미래신용정보(주)	요금납부(이체) 연체요금 업무 서비스 제공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계좌은행, 예금주 성명(사업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카드회사, 카드소유자 성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사용계약 만료 후 5년

(필수)

☐ 동의안함

※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서비스가 불가능 합니다.

☐ 동의함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을 확인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규정 준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 사용신청서 사본이 필요한 고객께서는 당사 콜센터(1577-65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사용약관

제1조(계약의 준수) 가스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료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이 속한 시설이 매매·임대·상속·경매·이사 등의 사유로 가스 사용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 전에 문서 또는 유무선 통신 매체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명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고객이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 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가스요금이 비정상적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고객은 공급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조(시설의 안전관리 및 책임) 1.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을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3조 1항 각호의 부당행위로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스 사용자에게 있다. 제3조(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의 징수) 1. 다음 각호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발생 시점을 알 수 없을 때는 확인 시점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가) 계량기 또는 온압보정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 계량기: 계량기 관리비용+전년 동월 사용량의 5배 - 온압보정장치: 전년 동월 사용량의 5배 나) 봉인 파손사용: 전년 동월 사용량의 5배 다) 당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전년 동월 사용량의 5배 라) 계량기 이전 배관 불법 연결사용: 전년 동월 사용량의 5배 마) 계량기 무단이설: 전년 동월 사용량의 5배 바) 부정 시공사용: 전년 동월 사용량의 5배 단, 전년 동월 사용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으로 계산하며,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량 산정은 월 사용예정량으로 산정한다.	제4조(요금산정 및 납부) 1. 사용자는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매월 공급자의 지정일에 공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일(납부 마감일)까지 요금이 미납된 경우, 공급규정에 따라 미납원금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2. 미납원금에 월 2%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일할계산하여 연간 최대 2개월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하며, 연체료를 부과한다.(미납원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3.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요금제도 및 요금 단가를 적용하며, 관계기관의 가스요금 고시가격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공급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변동가격 적용 일일기준으로 하여 요금에 반영한다. 제5조(검침과 청구서) 1.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청구서 송달은 당사가 매월 또는 정례 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가 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원격계량기의 경우 공급자에게 원격검침 값을 제공하며, 원격계량기의 고장에 따라, 원격검침이 어려운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검침을 진행 할 수 있다. 제6조(공급중지) 당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요금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한 제 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가스를 사용하거나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3. 그 밖의 안전관리규정 및 공급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중지 사유가 있을 때 제7조(가스계량기)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검·교정 및 교체 비용은 [별표7]에 따라 매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일반 계량기는 주택용에 한하여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특수계량기는 주택용에 한하여 특수계량기 비용에서 일반계량기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2. 10등급(G6)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리비용을 매월 납부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절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하여 교체한 경우 기 납부한 관리비용을 전액 환급한다. 단, 10등급(G6) 이상 계량기는 기 납부한 비용에서 이전에 발생된 수리 등의 점검 비용을 제외한다. 3. 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
---	--

주) 본 사용계약서는 충청남도에서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기본으로 하며,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공급규정에 따른다.

■ 자동이체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1. 자동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에게만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출금) 1. 계좌 및 카드 자동이체는 신청 월을 기준으로 익월부터 청구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매달 납부 마감일을 포함한 익월 7, 14일에 대하여 추가 출금이 이루어지며, 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매달 24일을 포함한 익월 2일에 대하여 추가 승인이 이루어진다. 3. 청구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으며, 예금 잔액 중 일부 금액이 어음, 수표 등 타 정권 부도 발생 시에는 전액 출금할 수 없다. 제3조(과실책임) 1.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 및 카드에서 당사가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 자동이체 예금의 지급 제한, 약정 대출의 연체 등으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납부자는 도시가스 이용약관 제1조 2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에 따른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4. 납부자는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자동이체 청구금액을 제외한 청구일 이전, 이후에 이종수납분에 대해서는 환불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당사의 수납 일자 기준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자동이체 신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은행 및 카드사, 당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출금 우선 순위) 1.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동이체 신청) 1.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3. 당사가 납부자로부터 전자서명 또는 녹취에 의한 출금 동의를 받아 은행에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 명세를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4. 단, 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의 안내누락 및 신청오류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6조(자동이체 해지) 1. 자동이체를 해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해지 신청을 받는 방법 3. 당사가 납부자로부터 전자서명 또는 녹취에 의한 해지 동의를 받아 은행에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해지 명세를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7조(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1.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카드사의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만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자와 당사의 협의로 조정한다. 제8조(정보제공) 1.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 카드사, VAN社에 제공된다. 제9조(추가 청구일)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주말, 근로자의 날로 인하여 추가 출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